

○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

- 2020. 1. 1.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,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
 - 2020. 1. 1.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, TOEFL은 응시국가 제한 없이 인정, TOEIC은 일본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, G-TELP는 미국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, TOSEL은 베트남·미얀마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하고,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
 - 다만,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음
 - 따라서,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
- ※ 토익 등 검정시험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료했고, 사전등록하지 않아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

사전등록 관련 안내

❖ **사전등록 방법**

- 토익(TOEIC), 텡스(TEPS), 지텔프(G-TELP) :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(<http://gosi.police.go.kr>)에 사전등록
- 토플(TOEFL), 플렉스(FLEX), 토셀(TOSEL) : education@police.go.kr로 성적표를 이메일 발송 후 경찰청 인재선발계(02-3150-2732)로 연락 필요

❖ **사전등록 시한**

- 텡스(TEPS), 지텔프(G-TELP), 토익(TOEIC) : 유효기간(2년) 만료 전
- 토플(TOEFL), 플렉스(FLEX), 토셀(TOSEL) : 유효기간(2년) 만료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성적표를 education@police.go.kr로 발송한 경우

❖ **사전등록 유의사항**

-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사전등록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 시험명, 등록번호, 성명, 시험일자, 점수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

❖ **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**

-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이 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됨
- '23. 3월부터 사전등록하여 경찰청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경찰청(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)에만 사전등록해야 함
- '23. 3월 이후 인사혁신처에 사전등록한 경우, 자료 공유가 되지 않아 성적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

※ 다만,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시기가 '23. 2월까지인 경우에는 성적 인정 기간 내에 한해 유효한 성적으로서 인정됨